



의 안 번 호	제000호
회 의 연 월 일	2022. 7. 18. (제493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기획조정관)
제출연월일	2022. 7. 5.

조직계장,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형 조직으로 차장 밑에 설치한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을 임기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경찰청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감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치안빅데이터팀을 신설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정원 1명(4·5급 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서 수사지원 정원 269명(8급 269명)을 증원하고, '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44명(9급 44명)을 전일제 공무원 정원과 통합하는 한편,

'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2년 2월에 설치한 사이버테러대응과의 신설기구 평가기간을 종전 '24년 9월말까지에서 '24년 12월말까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0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통신기술담당관 및 장비담당관”을 “정보통신기술담당관, 장비담당관 및 치안빅데이터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비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를 “장비담당관은 총경으로”로 하며, “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를 “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치안빅데이터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1.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3. 치안분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4. 치안분야 데이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
5.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제7조를 삭제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4 중 총계 “2,000”을 “1,999”로 하고, 일반직 계 “789”를 “78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총경 2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신설하며,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5”를 “4”로 한다.

별표 15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32,959”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4,301”을 “4,342”로 하며, 행정서기보 “468”을 “508”로 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62”를 “163”으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41.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41.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40.0”를 삭제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16 중 총계 “133,679”를 “133,948”로 하고,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33,638”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4,980”을 “5,290”으로 하고, 행정서기 “1,358”을 “1,627”로 하며, 행정서기보 “529”를 “569”로 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62”를 “163”으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41.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41.0”를 삭제하

며, “행정서기보 40.0”를 삭제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17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604”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600”을 “6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0”을 “593”으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3.0”를 삭제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0”를 삭제한다.

별표 18 제1호10)의 정원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9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치안빅데이터팀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14의 정원 1명(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14의 정원 269명(행정서기 269명)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보화장비정책관) ① (생략)	제6조(정보화장비정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화장비정책관 밑에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u>정보통신기술담당관 및 장비담당관</u> 각 1명을 둔다.	② ----- <u>정보통신기술담당관, 장비담당관 및 치안빅데이터팀장</u> ----- -----.
③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및 장비담당관은 <u>총경으로</u> 보하고, <u>정보통신기술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u> 보한다.	③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및 장비담당관은 <u>총경으로</u> , <u>정보통신기술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u> , <u>치안빅데이터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u> 보한다.
④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④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u> 를 위한 계획의 수립 ·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u><삭 제></u>
7. (생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u>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u>

제7조(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장 밑에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치안분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1.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3. 치안분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4. 치안분야 데이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

5.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제7조 <삭 제>

2. 치안분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3. 치안분야 빅데이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

4. 치안분야 빅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제7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5 및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u>2,000</u>	<u>1,999</u>	-1	
일	반	직 계	•		•		
			•		•		
				<u>789</u>	<u>788</u>	-1	
			•		•		
			•		•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u>		<u><신 설></u>	<u>1</u>	+1	
		<u>전산사무관</u>					
			•		•		
			•		•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u>5</u>	<u>4</u>	-1	
			•		•		
			•		•		

[별표 1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 <u>공무원</u>			
<u>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u>	<u>132,959</u>	<u><삭 제></u>	-132,959
•	•	•	
•	•	•	
일반직 계	<u>4,301</u>	<u>4,342</u>	+41
•	•	•	
•	•	•	
행정서기보	<u>468</u>	<u>508</u>	+40
•	•	•	
•	•	•	
전산서기보 또는	<u>162</u>	<u>163</u>	+1
방송통신서기보			
•	•	•	
•	•	•	
2. <u>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계</u>	<u>41.0</u>	<u><삭 제></u>	-41.0
<u>일반직 계</u>	<u>41.0</u>	<u><삭 제></u>	-41.0

<u>행정서기보</u>	<u>40.0</u>	<u><삭 제></u>	-40.0
<u>전산서기보</u> 또는	<u>1.0</u>	<u><삭 제></u>	-1.0
<u>방송통신서기보</u>			

[별표 16]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33,679	133,948	+269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33,638	<삭 제>	-133,638
일반직 계	4,980	5,290	+310
행정서기	1,358	1,627	+269
행정서기보	529	569	+40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62	163	+1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41.0</u>	<u><삭 제></u>	-41.0
<u>일반직 계</u>	<u>41.0</u>	<u><삭 제></u>	-41.0
<u>행정서기보</u>	<u>40.0</u>	<u><삭 제></u>	-40.0
<u>전산서기보</u> 또는	<u>1.0</u>	<u><삭 제></u>	-1.0
<u>방송통신서기보</u>			

[별표 17]

경찰병원 정원표(제7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 <u>공무원</u>			
<u>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u>	<u>604</u>	<u><삭 제></u>	-604
·	·	·	
일반직 계	<u>600</u>	<u>603</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0</u>	<u>593</u>	+3
·	·	·	
2. <u>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계</u>	<u>3.0</u>	<u><삭 제></u>	-3.0
<u>일반직 계</u>	<u>3.0</u>	<u><삭 제></u>	-3.0
<u>3급 또는 4급 이하</u>	<u>3.0</u>	<u><삭 제></u>	-3.0

[별표 1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81조 관련)

1. 경찰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0)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	1명 (총경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 의안 소관 부서명 >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연 락 처	02 - 3150 - 1157